삼정 KPING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July 24 2023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가격

OECD: BEPS 2.0 (필라 2 규정)에 대한 신규 Guidance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23 년 7월 17일 BEPS 2.0에 대한 신규 가이던스(OECD Secretary-General Tax Report to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를 발표함. 이 자료에는 138개 회원국에서 합의한 Outcome Statement에 따라 디지털경제에서의 세무 이슈에 대응 방안인 Two-Pillar solution에 대한 남은 안건들 중 주요 결과물에 대한 요약 내용이 포함됨

OECD 발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포괄적 이행체계의 제 15 차 총회에서 합의된 성명문은 Pillar 1, 2 이행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회원국 대표들이 20 개월 동안 진행한 세부적인 협의 끝에 거둔 성과이며, 17 일 발행된 OECD 설명문(OECD reports strong progress to G20 on international tax reforms - OECD)에서는 주요 결과물들을 요약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TaxNewsFlash)특정 마케팅 및 유통·판매 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식을 단순화하고 일원화하는 체계안 (Pillar 1 Amount B) 마련 (2024 년 1 월까지 OECD 이전가격 지침서에 반영예정)

- · (Subject to Tax Rule) 다른 조세관할국 내 저세율 및 명목세율로 과세되는 특정한 그룹 내 거래에서 발행하는 소득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이 해당 소득을 "tax back" 소득으로 포함시켜 추가세액을 징수하는 지침을 조세조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지국과세규칙(STTR) 및 이행체계 마련
- · 다국적 기업들의 잔여이익에 대해 관할국들이 국내 과세권을 재배분 및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조약안(Multilateral Convention, MLC) (Pillar 1 Amount A)
 - 일부 관할국들이 다자조약안의 특정 사항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사항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후 다자조약안에 서명 준비가 완료되면 포괄적 이행체계는 다자조약안을 발효할 예정
- 필라 2 관련 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항목에 대한 추가 가이던스: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GloBE Information Return) 간소화된 보고 요건 및 Centralized Filing/exchange framework 관련 내용포함
 - 적격국내최저한세 추가세액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세이프하버 (Safe Harbour) 및 전환기 소득산입보완규칙 (Undertaxed Payment Rule) 관련 세이프하버 (Safe Harbour), 최종모회사의 관할권 법인세율이 최소 20%인 경우, 2025 년 12 월 31 일 이전 결산 연도에 대해 UTPR 추가세액은 0 원은로 간주
 - 이 외에도 외환환산, 실질기반제외소득 및 환급가능 세액 관련 내용이 업데이드됨
- OECD 는 국제 기관들과 협력하여 Pillar 1, 2 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 실행계획을 준비

향후 일정

- 성명문은 2023 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재무장관들 및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전달될 예정
- 2023 년 하반기에 다자조약안에 서명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3 년 말에 다자조약안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 다자조약안은 관할국 별 내부 회담, 입법 및 행정 절차를 고려하여 2025 년에 발효될 예정
- Pillar1 Amount B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다음 주부터 2023 년 9 월 1 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하여 연말에 완료될 예정. 포괄적 이행체계는 2024 년 1 월까지 Amount B 에 대한 최종안을 승인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 저역량 관할국들의 필요사항과 다자조약안에 따른 상호의존성도 적절히 고려될 예정

• 원천지국과세규칙 관련 합의문은 다음 주에 발행될 예정이며, 원천지국과세규칙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문(Multilateral Instrument, MLI)은 2023 년 10 월 2 일에 발행되어 서명이 가능할 예정

OECD 는 Pillar 1,2 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이행지원 계획을 마련할 예정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2 서 6043, 2023.05.11

제목: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용한 database 는 전 세계 약 2 억개 기업정보를 보유하면서 표준화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신발제조용 합성피혁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6년 100% 출자하여 설립한 제조업체 OOO(국조법상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 인)로부터 신발제조용 합성피혁을 매입하여 운동화 제조업체(1차 협력사)에 재판매
- 조사청은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조법 거래순이익률방법(수익성 지표: 총원가가산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면서 2019~2020사업연도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신발제조용 합성피혁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등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심판청구를 제기

2) 쟁점

총원가가산율을 수익성 지표로 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고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당사자들의 주장

- 1) 조사청이 선정한 쟁점비교대상회사는 000 1) 와 업종, 기능, 지역, 규모, 면적에서 상이하여 비교가능성이 낮고, 거래조건과 상황이 본질 적으로 다르므로 조사청이 산출한 가격은 국 조법 상 정상가격이라 할 수 없음
- 000은 현지법인 연구인력 및 기능을 확대하 여 청구법인의 설계지시에 따라 생산하는 구 조에서 벗어나 생산시설, 환경문제 등을 감안 한 시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기존 제품과 품질 및 기능은 동일하지만 원가율이 현저히 낮고 제조방법이 전혀 다른 수입품을 개발
- 산업적인 측면에서 조사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회사는 의류제조, 섬유제조 회사로, 의 류제조회사는 기능과 취급 재화가 000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제 외되어야 하고 섬유제조업체는 000의 활동 전 단계이기에 비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000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제품 재고, 재 공품 재고, 원재료 재고 등 청구법인이 부담하 여야 할 재고의 책임을 100% 부담하는 구조이 기에 쟁점비교대상회사와의 비교가능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고위험(폐기, 처분손실)을 반영하여 원 가율을 조정하여야만 함
- 것은 자체개발한 신제품 매출의 영향으로 인 한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증가 한 것에 지나지 않음
- 2021사업연도에 OOO는 기존제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신제품의 매출이 감소하여 총원가 000원, 총원가가산율 2.16%가 발생함. 조사 청의 기준에 의하면 2021년에는 조사청이 제 시한 2020년 정상가격 범위를 적용한다면 000원의 소득조정이 필요하고 2022년도 이 후에도 계속적으로 부(△)의 소득조정이 필요 할 것
- 또한 OOO는 동일한 제품을 다른 신발제조업 체 등에도 직접 판매하고 있으나 그 판매가격 은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단가와 동일. 조 사청이 제3자 거래 가액을 유의미하게 해석하

- 쟁점거래는 국조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국제거 래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대상 임에도 합당한 근거없이 이전가격 조정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000는 브랜드나 디자인, 주요 제품의 핵심기술 등 중요한 무형자산을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에 비해 기능이 단순하고 신뢰성 있는 비교 대상 확보가 용이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개별기업보고 서에서도 조사청과 동일하게 000를 분석 대상으 로 선정
- 조사청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인 Orbis database(Bureau van Dijk에서 운영하는 전세계 기 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하여 000가 취급 하는 재화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시장 위험, 시장 요건,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측면의 비 교가능성 평가 요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쟁점비 교대상회사를 선정
- 청구법인은 ooo의 전체 순이익을 기준으로 통합 분석을 하였으나 000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와 제3자 거래의 대상 및 성격이 상이하여 거래별 로 구분하여 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평가임. 따라서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000 간의 거래에 대한 구분 손익 계산을 통해 산출한 총원 가가산율을 기준으로 이전가격 과세조정
- 2) 2019년, 2020년에 000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매입가격이 적정하며 이전가격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음
 -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사업연도 개별기업보고 서에서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음

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4) 판단

- 이 건의 경우 비록 조사청이 선정한 쟁점비교대상회사 가운데 OOO 와 동일 업종(US-SIC코드 2295)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조사청은 쟁점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업종 조건에 US-SIC코드 2295를 포함하여 877개 회사를 후보군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비교대상회사에 위 코드 업종이 제외된 것은 계속사업 중이 아닌 기업, 외부감사 부적정 의견 기업, 기능의 유사성이 없는 기업 등이 제외됨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Orbis database는 전 세계 약 2억개의 기업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표준화된 재무제표 및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어 Orbis database에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은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그 가격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
- 한편 청구법인은 신제품 개발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액 증가 때문에 2019사업연도 ~ 2020사업연도 중 OOO의 총원가가산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기간에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각 △1.85%, △5.74%로 감소하였는데 비하여 OOO의 영업이익률은 각 15.74%, 1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신제품 매출의 영향으로 OOO의 영업이익률이 증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줄어든 합당한 이유를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면서 2019사업연도 ~ 2020사업연도 중 신발제조용 합성 피혁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٥

03

관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4 방법 적용 시 동종 ● 동류비율 산정 절차를 개선

관세청은 지난달 21 일 관세법 제 33 조에 따른 4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동종 ● 동류 비율 산정 절차를 개선하고 4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1) 배경

- 4방법은 수입 후 국내에서 재판매 되는 가격에서 비교대상 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동종 ● 동류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공제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방법으로 그동안 관세청이 4방법을 이용하여 과세한 다수의 사례에서 납세자 불복이 진행되었으며 관세청의 4방법 적용 절차의 오류를 이유로 법원에서 납세자가 승소하였음.

2) 주요 개정내용

A. 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규정

- 납세자가 제출하는 납세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납세의무자 비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이 산출한 동종 ● 동류 비율을 이용해 4방법을 적용할 수 없 도록 규정함

[고시 개정안 中]

제33조 3항 4호

4. 제36조에 따라 영 제27조제5항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납세의무자 비율"이라 한다)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B. 동종 ● 동류 비율 산정 절차의 개선

- 비교대상업체 선정 시 수입이 이루어진 회계연도별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기존에 는 선정업체의 수를 제한하였으나 그러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 절차를 합리화함

[고시 개정안 中]

제33조 2항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u>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품의</u> 품목번호의 범위(이하 "동종·동류 품목번호"라 한다)를 연도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 (후략)

제 34 조 1 항

- ① 세관장은 제 33 조제 1 항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들을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산업의 특성과 연도별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 1.납세의무자와 <u>동일한 연도에</u> 동종 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업체... (후략)

3) KPMG's Comment

- 관세청이 4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시기가 아닌 시기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과세한 사건 등 4방법 적용 절차상의 하자가 있던 사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4방법 적용 절차를 구체화하는 금번 개정안이 행정예고 된 것으로 판단됨
- 본 개정안으로 향후 과세 목적으로 4방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개선 된 절차에 따라서 4방법을 적용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4방법을 적용하지 못하여 마지막 관세평가 방법인 6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Key Contacts

삼정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u>윤용</u>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